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[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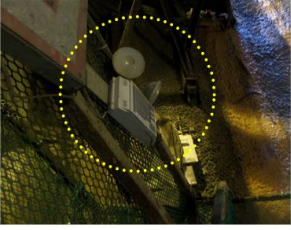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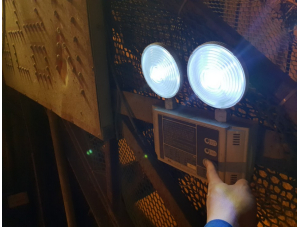

□ 점검일시 : 2018.05.04 (금)

□ 조치결과

◆ 점검자 : 정진혁, 박수엽

| 지적내용  | 점검사진  | 조치일자  | 조치사진  |
|---|---|---|---|
|   |   | 조치내용  | 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유출수직구 가설계단 최하단 계단참의 안전난간이 고정이 미흡하여 기준하중인 100킬로그램 이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수요망<br/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</p>   |    | 2018.05.08  |    |
|   |   | <p>- 가설계단 계단참 안전난간대 보수 완료.</p>  | 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저류 배수터널 저지2 라이닝폼 상부 락볼트 돌출부 및 하부 이동통로 구간에 돌출된 앵글 단부는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시 찰림등의 위험이 있으니 완충재등 보호시설 설치 후 관리바람.<br/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터널-7(라이닝거푸집작업)<br/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 |   | 2018.05.06  |   |
|   |   | <p>- 라이닝폼 상부 락볼트 돌출부 철근캡 설치 완료.<br/>- 이동통로 구간 돌출된 앵글단부 완충재 설치 완료.</p> |   |

|   |   |   |   |
|---|---|---|---|
| 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유지관리수직구에 라이닝 시공용 슬립폼은 유압상승 방식으로 향후 상승시 유압이음부의 이탈에 의한 비래사고와 폼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큰 압력이 걸리는 이음부에는 이탈방지 조치를 수행하고 상승상태에서는 하부 출입통제 철저요망<br/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</p> |    | <p>2018.05.09</p> <p>- 슬립폼 유압이음부 이탈방지와이어 설치 완료.</p>   |    |
|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환기 횡갱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은 설치위치가 높고 주변에 물이 유출되어 감전위험 및 비상시 대처가 어려움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관리바람.<br/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, 기구의 적정설치 등)</p>  |  | <p>2018.05.09</p> <p>- 분전반 주변 낙수 구간 수발천 설치 및 누전차단기 별도 분리하여 설치하여 비상시 대비 완료. (분전함 위치 이동예정, 5월중)</p> |   |
| <p>○ 품질관리</p> <p>- 저류 배수터널 방수시트 중 장비 작업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보수바람.<br/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   |  | <p>2018.05.09</p> <p>- 손상된 방수시트 보수 완료.</p>  |  |

|   |   |   |   |
|---|---|---|---|
| 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유출수직구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이 된 경우 비상탈출계단의 위치를 알려주는 비상등이 테스트 결과 미작동 중이므로 보수 또는 교체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(비상구 등의 유지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<p>2018.05.05</p> <p>- 유출수직구 하부 비상등 교체 및 작동 상태 확인 완료.</p> |    |
| 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환기 수직구 계단 통로에 산재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산물은 이동시 미끄럼 및 분진발생의 원인이 됨으로 청소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(작업장의 청결)</p>   |   | <p>2018.05.05</p> <p>- 환기수직구 계단 통로 콘크리트 부산물 제거 완료.</p>    |  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홍보관 계단실 계단은 현재 콘크리트 양생으로 인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힘든 상황으로 단부 방호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로프 등을 사용하여 임시 안전시설 설치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 |  | <p>2018.05.08</p> <p>- 홍보관 계단실 단부 로프 설치 완료.</p>           |  |

|   |   |  |   |
|---|---|--|---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홍보관 신축공사 현장에 기 시공된 설비실로 넘어가는 단차부 작업발판이 작업비계 시공으로 비계에 간섭되어 해당 개소로 통행할 경우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섭이 없는 곳으로 이동 설치요망<br/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              |    | <p>2018.05.07</p> <p>- 단차부 작업발판 위치 조정 완료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홍보관 2층 자재 반입을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한 구간에 낙하물 방지시설 없이 단부에 자재를 적치한 상태로 해당 작업 완료시까지 하부 통행을 철저히 통제요망<br/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</p>     |   | <p>2018.05.07</p> <p>- 2층 안전난간 재설치 및 단부 자재 이동 완료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홍보관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비계 밑둥 받침을 전용 밑받침 철물이 아닌 목재판으로 시공하여 높이 조절이 안되는 상태이므로 지반침하 시 수직재 밑둥이 지면에서 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요망<br/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(비계의 점검 및 보수)</p> |  | <p>2018.05.05</p> <p>- 강관비계 하부에 설치된 깔목은 정비완료하였으며, 수시 확인하여 비계가 침하되지 않도록 관리 예정임.</p> |  |

|   |   |   |  |
|---|---|---|--|
|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홍보관 신축공사 2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장에 이동식 전선이 작업자 통행로 바닥에서 사용중으로 피복이 훼손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중의 특성상 부양이 안될 경우 통로에서 이격하여 관리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</p> |    | <p>2018.05.05</p> <p>- 이동식 전선 지상 가공 처리하여 피복 훼손방지 조치.</p>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홍보관 신축공사 작업장에 고속 회전하는 이동식 동근톱 계열의 기계기구는 미사용시 콘센트를 분리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<p>2018.05.07</p> <p>- 작업장 공도구는 미사용시 전원플러그 제거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방지토록 근로자 교육 실시.</p> |  |

|   |   |   |   |
|---|---|---|---|
| <p>○ 품질관리</p> <p>- 홍보관 계단실 거푸집 고정핀은 거푸집 탈영시 제거가 안될 경우 녹슬면서 콘크리트 부식 및 균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탈영시 제거하도록 하고, 공정상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고소작업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는 탈영시 제거하도록 교육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 |  | <p>2018.05.07</p> <p>- 거푸집 고정핀 제거 완료.</p> |  |
|---|---|---|---|